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3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나2036862 근저당권말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1. [redacted]시 [redacted]구
	2. [redacted]시
제 1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가합37914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0. 12.
판 결 선 고	2017. 11. 2.

주 문

1. 피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에 관하여 서울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3

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9. 1. 5. 접수 제106호, 같은 등기소 2016. 1. 14. 접수 제1533호, 같은 등기소 2016. 8. 26. 접수 제31616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5. 12. 접수 제15857호, 2016. 8. 26. 접수 제31617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피고 파주시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에 관하여 위 서대문등기소 2015. 12. 9. 접수 제5433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피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B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8. 8. 26. 접수 제42813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B이 각종 세금을 체납하자,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2014. 1. 10. 위 법원 2013가합9215호로 무변론 승소판결(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3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B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강제로 빼앗아 간 후,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B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이고,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원인 무효인 B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 진 것이므로 역시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다른 사유에 기하여 이미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참조), 그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7. 9. 1. 이 사건 각 압류등기가 2014. 1. 10. 확정판결을 이유로 모두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각 압류등기가 말소된 이상 원고는 더 이상 피고들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1심이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B 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3

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는데, 이 부분 제1심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 없고, 피고들이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이후에야 이 사건 각 압류등기가 말소된 점을 참작하여 소송총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재판장 판사 허부열

판사 김유진

판사 박해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3

목록

1. [redacted]구 D 대 185.8m^2

2. 제1항 기재 대지 지상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여관

 1층 111.1m^2

 2층 111.1m^2

 3층 111.1m^2

 4층 111.1m^2

 5층 111.1m^2

 지층 125.55m^2

 용도 지층 근린생활시설

 1층 근린생활시설 64.35m^2, 주차장 46.75m^2

 2, 3, 4, 5층 여관. 끝.